

노원구서비스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노 원 구 서 비 스 공 단
[경영혁신팀]

목 차

1.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1
가. 인권경영 개요	1
나.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1
다. 인권영향평가 대상	1
라. 평가 주관	2
마. 평가 개요	2
바. 평가 방법 및 대상	3
2. 인권영향평가 결과	4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4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0
3. 총평 및 권고의견	14
가. 총평	14
나. 권고의견 및 제언	15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17
붙임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50
2.1. 체육서비스(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	50
2.2. 주차장서비스(공영주차장 운영)	53

1.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가. 인권경영 개요

- 인권경영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 리스크에 대한 실사와 문제 발생 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¹⁾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표

나.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²⁾
- 인권영향평가는 조직 스스로 인권경영 현황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인권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취약지점을 파악하여 잠재된 인권리스크에 대응토록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음

다. 인권영향평가 대상

- ‘기관운영 측면’과 ‘주요사업 측면’을 평가대상으로 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공단의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분야에 대한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공단의 사업활동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잠재적 또는 기존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 2020년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본부 및 경영기획부 소속 부서와 주요사업 부서인 실내체육팀(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주차사업팀(공영주

1) 법무부 ‘인권경영 표준지침’, 2019.05.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2018.08.

차장 운영)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라. 평가 주관

- 본 평가는 공단 경영혁신팀 주관하고, (사)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 자문기관으로 참여

마. 평가 개요

시행기간	진행사항
2020.01.28.~0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지침 및 선언문 개정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업무 특성 및 주요 인권이슈 반영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위원 Pool 구성안 반영
20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공단 부서장 대상 사전 실태조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 본부 및 경영기획부 소속 부서장 - 주요사업: 사업운영부 소속 부서장 ○ 부서장 대상 인권경영 기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경영, 인권경영 실행, 체크리스트 작성법
2020.02.12.~0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및 평가 진행
2020.02.18.~0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바. 평가 방법 및 대상

구분	내용
기관운영 ³⁾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 표준 체크리스트 구성 지표를 공단 여건에 맞도록 조정(10개 이슈 151개 지표) · 2019년 법무부 「인권경영 표준지침」 내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방지’ 관련 3개 지표 포함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팀, 총무파트, 안전총괄팀, 전산파트
주요사업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실태조사 및 유관 공단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지표 개발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서비스(실내체육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 - 3개 이슈 15개 지표 · 주차장서비스(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운영 - 4개 이슈 17개 지표

3)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지정’ 문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시, ‘예’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현황 또는 향후 계획을 기재하도록 함(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요약

-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 노동의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모든 평가지표 양호
- 반면,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분야, 소비자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정책적 검토 또는 보완 필요 사항이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는 본 평가와 함께 개선될 사안으로 판단

	이슈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2	11	5	2	-
2	고용상의 비차별	12	5	-	-	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2	2	-	-	-
4	강제 노동의 금지	9	-	-	-	-
5	아동 노동의 금지	4	-	-	-	8
6	산업안전 보장	3	9	2	1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2	3	5	-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7	1	-	-	-
9	환경권 보장	6	4	7	1	-
10	소비자 인권 보호	11	-	1	-	3
합 계		76	34	18	9	15

o 분야 내 항목별 평가결과

- '산업안전 보장'에서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항목의 보완 필요사항 확인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서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 확인
- '환경권 보장'에서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보완 필요사항 확인
- '소비자 인권 보호'에서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검토 필요사항 확인

이슈	항목	평가결과4)			
		지표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3	-	3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4	-	1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	-
	1.4. 인권경영 성과	7	1	5	1
	1.4. 구체절차 마련	6	6	-	-
2. 고용상의 비차별	2.1. 고용상 비차별	5	3	2	-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6	-	-
	2.3.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3	-	3	-
	2.4.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방지	3	3	-	-
	2.5.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2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2	2	-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5	-	-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5	-	-
4. 강제 노동의 금지	4.1. 강제노동 금지	7	7	-	-
	4.2.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2	-	-
5. 아동 노동의 금지	5.1. 연소자 고용 금지	4	4	-	-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8	-	-	-

이슈	항목	평가결과4)			
		지표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6. 산업안전 보장	6.1. 사업장 안전	5	-	5	-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	2	1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2	2	-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1	-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	2	2
	7.2. 모니터링 실시	2	-	-	1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	-	-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5	4	1	-
	8.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3	-	-
9. 환경권 보장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4	2	-
	9.2. 환경정보의 공개	3	2	-	1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4	-	1	2
	9.4. 비상계획 수립	5	-	1	4
10. 소비자 인권 보호	10.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4	-	1
	10.2. 서비스 결함시 조치	3	1	-	-
	10.3. 고객 개인정보 보호	6	6	-	-

o “6. 산업안전 보장” 보완필요사항

(6.2.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아니오]**

(6.2.3.)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보완필요]**

- 현재 공단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공단의 사업장은 특별히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곳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서, 임산부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별도 부서 배치하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산부 근로자의 업무 배치는 직무별로 가능하나, 별도 배치에 따른

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없음’, ‘해당없음’ 항목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

업무 난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큰 효과는 없는 상황

☞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련법⁵⁾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임신부에 대해서는 관련법⁶⁾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부여 여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시간 단축,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요구가 있는 경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공단 관계부서의 확인이 요구됨

(6.2.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보완필요]

-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요구나 필요성이 제기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

☞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법⁷⁾에 따라 공단이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⁸⁾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보완필요사항

(7.1.2.) 공단은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아니오]**

(7.1.4.) 공단은 협력업체와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아니오]**

(7.2.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파트너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니오]**

-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협력회사와의 계약에서도 인권보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향후 시행 예정)

☞ 공단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등 협력회사가 인

5)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6)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내 인증 제도 참조

권을 침해할 경우 공단에 간접·2차적인 윤리적·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어, 기관의 평판과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이후 협력업체와 계약시 인권보호 준수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 “9. 환경권 보장” 보완필요사항

- (9.1.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보완필요]
- (9.2.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아니오]
- (9.3.2.)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니오]
- (9.3.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니오]
- (9.4.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아니오]
- (9.4.2.) 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니오]
- (9.4.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아니오]
- (9.4.5.) 공단과 병원간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아니오]

- 공단은 체육시설 관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청 ‘날씨경영인증’을 획득하여 체계적 시설물 관리에 적용하며, 재난안전 및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검증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⁹⁾에 배출량 등록을 시행 등의 노력은 있으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예방 등에 관한 포괄적 환경경영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 공단은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환경사고’에 특화된 대응 계획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음. 이는 공단 업무 특성상 오염물질

9)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main.do>) 내 공공부문 배출량통계 참조

(수질, 대기, 토양 등) 배출로 인한 지역사회 환경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공단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 반경 5분 거리 내 대형 의료기관(상계백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공단 내 의료시설 및 의료진 상주의 필요성이 낮음

☞ 공단의 현행 환경경영체계(계획)이 환경 관련법령¹⁰⁾ 또는 노원구 환경계획¹¹⁾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의하며, 기존 재난대응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의료시설 및 의료진 상주의 필요성은 없으나,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이송 직전까지 환자 또는 요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장비 및 기술¹²⁾에 관한 실태점검은 필요

○ “10. 소비자 인권 보호” 보완필요사항

(10.1.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고객에 따라 다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외]**

-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단 서비스 주 고객의 99% 이상이 내국인으로, 고객에 따라 다국어로 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공단 서비스시설 이용객과 함께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국적별 언어사용 현황을 모니터, 필요한 경우 한글, 영문과 함께 해당 언어로 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을 기대¹³⁾

10)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11) 노원구 홈페이지(<http://www.nowon.kr/new/green/green.jsp?mid=54040>) 내 ‘환경계획’ 참조

12) 자동심장충격기(AED), 심폐소생술과 같은 구급장비와 구조기술. 공단은 2019년 심폐소생술 유공기관으로 선정

13)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중문 홈페이지(https://www.gurosisul.or.kr/default_chn.asp) 참조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 - 실내체육팀

○ 요약

- 실내체육팀은 고객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근로자 인권 보호 이슈 전반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고객 인권 보호)** ①고객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매뉴얼은 본부 안전총괄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기적 점검 활동 역시 본부-사업운영부 간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②체육시설 내 안전요원은 향후 배치예정(시기 미정)이나 의료 인력 상주는 계획하지 않음.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사업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외국인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국어 및 다양한 안내표지는 현재 설치돼 있지 않으나, 추후 예산편성이 되면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자 인권 보호)** ①체육시설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보호장구류, 위생용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추후 수요조사 및 예산편성을 통해 공단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함. ②체육시설 이용객의 불만, 민원 접수 채널은 다양하게 열려 있으며, 별도의 콜센터 기능 없이 경영혁신팀 CS총괄 직원이 민원 대응을 담당하도록 함. ③ 직원상담프로그램은 현재 단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¹⁴⁾ 형태로 개선된다면 지속성·효과성 측면에서 현장 근무자 대체인력을 고려한 사업장 일선직원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출처: 두산백과)

	이슈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고객 인권 보호	5	-	2	-	-
2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	2	1	-	-
3	근로자 인권 보호	1	1	3	-	-
합 계		6	5	4	-	-

o 이슈 내 항목별 평가집계

이슈	지표 요약	평가결과 ¹⁵⁾		
		예	보완 필요	아니요
1. 고객 인권 보호	1.1. 이용객 권리침해 방지	✓		
	1.2.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		
	1.3.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		
	1.4.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시스템			✓
	1.5.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설비, 용품	✓		
	1.6. 안전·의료인력 및 응급체계			✓
	1.7. 배상책임보험 가입	✓		
2.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2.1. 고령자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		✓	
	2.2. 외국인 및 장애인 이용편의 보장			✓
	2.3. 고령자 및 장애인 전담인력 운영		✓	
3. 근로자 인권 보호	3.1. 근로자 안전 보건용 물품 지급			✓
	3.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		
	3.3.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및 교육		✓	
	3.4. 민원 담당자 및 담당 조직 운영			✓
	3.5.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제공			✓
합 계		6	5	4

15)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없음', '해당없음' 항목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

2) 공영주차장 운영 - 주차사업팀

○ 요 약

- 주차사업팀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교통 약자) 접근성 보장, 근로자 인권 보호, 지역 환경 보호 이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①공영주차장 시설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노원구 자치조례¹⁶⁾에 따라 설치장소, 주차공간, 유도 및 표시 등을 기준으로 적합하게 설치돼 있음. 그러나 외국인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국어 표지판은 현재 미흡한 바, 이용자 모니터링 후 향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②공영주차장 시설 내 장애인 이동을 돕는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은 설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근로자 인권 보호)** 공영주차장 이용객과 직원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며, 사업장별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직원의 '의도치 않은 불친절'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고객응대 매뉴얼은 미흡한 상황(다양한 고객 대응 상황을 정형화하는데 한계)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제공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현장 대체인력 운영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환경 보호)**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장과 공회전 차량 등 환경오염 유발 차량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상 차량을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 서울시가 운영중인 '노후차량 단속시스템'¹⁷⁾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참조

17) 서울시 노후차량 단속시스템 관련 보도(MBC 뉴스투데이 2019.12.02.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31702_28983.html)

	이슈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고객 인권 보호	6	-	-	-	
2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1	2	-	-	-
3	근로자 인권 보호	4	1	1	-	-
4	지역 환경 보호	1	1	-	-	-
합 계		12	4	1	-	-

o 이슈 내 항목별 평가집계

이슈	지표 요약	평가결과 ¹⁸⁾		
		예	보완 필요	아니요
1. 고객 인권 보호	1.1. 이용객 권리침해 방지	√		
	1.2.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		
	1.3.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		
	1.4. 화재, 사고, 도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		
	1.5. 구급약품 구비와 응급조치 교육	√		
	1.6. 배상책임보험 가입	√		
2.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21. 장애인 및 외국인 주차편의를 고려한 설계		√	
	22. 장애인 주차면에 대한 일반이용자 단속	√		
	23. 장애인 및 외국인 이용편의 보장		√	
3. 근로자 인권 보호	3.1. 근로자 안전 보건용 물품 지급	√		
	3.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		
	3.3.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및 교육	√		
	3.4. 근로자 안전시설 및 신고시스템	√		
	3.5.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제공		√	
	3.6. 상해보험 가입			√
4. 지역 환경 보호	4.1. 저공해 및 경형 차량 우대정책	√		
	4.2. 공해 발생 차량 이용 제한		√	
합 계		12	4	1

18)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없음', '해당없음' 항목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

4. 총평 및 권고의견

가. 총평

-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증진 노력을 지역사회와 연관산업으로 전파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번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향후 공단이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측면에서 인권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화를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켜 나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관운영 측면에서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이슈에서 일부 보완 필요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5개 이슈에서는 미흡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경제, 환경, 사회적 규범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고용 및 노동, 노사관계, 지역사회 관련 인권 이슈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공단의 노력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평가 대상 주요사업(노원구민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서도 분야별 인권경영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간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실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음
- 그러나, 공단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공급망 단계의 인권경영 이슈는 향후 평가지표 일부를 보다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거나, 협력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요구됨

나. 권고의견 및 제언

o 기관운영 측면 인권영향평가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임산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근거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장애인 이동 편의에 대해서는 공단이 관계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적극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업무계약 체결시 협력업체의 인권존중 의무를 명시한 '인권존중 이행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예방하고, 공단의 인권경영 리더십 확산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
- 환경 관계 법령, 노원구 환경계획 등을 반영하여 환경경영체계를 정비하고, 임직원에게 대하여 환경·안전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공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홈페이지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를 검토할 것을 제안함

o 주요사업 측면 인권영향평가

-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 고객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활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주기적 점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 (공영주차장 운영) 서울시 노후차량 단속시스템과 연계, 환경오염 유발 차량에 대한 이용 제한을 제안함
- (공통) ①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장치 설치 검토, 안내표지 표기방법 개선 ②직원 안전 및 보건 향상을 위하여 공단 차원에서 방한·방서용품, 보호장구류, 위생용품 등 지급 ③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함 ④ 공단의 인권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향후 평가지표를 추가·보완하며, 평가대상 주요사업을 새롭게 선정하는 경우,

계획(Plan)-실행(Do)-평가·환류(See) 프로세스에 따른 '주요사업 인권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함

- * 예) [1차년도] 주요사업의 인권 실태조사 및 리스크 저감 계획 수립,
[2차년도] 인권경영 실행, [3차년도] 인권영향평가 시행

- 붙임 :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표(답변결과 포함)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표

작성부서명	경영혁신팀
-------	-------

이슈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1.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1.1.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지정]		✓		
1.1.3.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1.1.4.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를 표명하고 있다.	✓				
1.1.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1.1.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소 계	3		3		

【항목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2.1.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1.2.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1.2.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1.2.4.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1.2.5. 협력업체 또는 용역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지정]		✓		
1.2.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 계	4		1	1	

【항목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3.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1.3.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1.3.3. 공단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1.3.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3.5. 협력업체 또는 용역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지정]			✓	
소 계	4			1	

* 전담부서: 공단의 경우 경영혁신팀

** 인권준수 감시장치: 공단의 경우 「인권경영지침」이 이에 해당함

【항목 1.4.】 인권경영 성과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4.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지정] ✓				
1.4.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1.4.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1.4.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1.4.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1.4.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1.4.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소 계	1	5	1		

【항목 1.5.】 구제절차 마련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5.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지정]	✓			
1.5.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1.5.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1.5.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1.5.5.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 한다.		✓			
1.5.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소 계		6			
합 계(항목 1.1.~1.5.)	12	11	5	2	-

이슈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2.1.】 고용상 비차별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1.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지정] ✓				
2.1.2. 공단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2.1.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1.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1.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소 계	3	2			

* 고용: 채용, 교육, 배치, 승진, 퇴직 등 HRD, HRM 전 과정을 포괄함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2.1. 공단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정]✓				
2.2.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근로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2.2.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2.4.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2.2.5. 공단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2.6. 공단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지정]✓				
소 계	6				

【항목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3.1.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3.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3.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근로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지정]	✓			
소 계		3			

【항목 2.4】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방지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4.1. 공단은 근로자가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 업무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정]✓				
2.4.2.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다.	✓				
2.4.3. 공단은 근로자가 공개된, 혹은 비공개된 공간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소 계	3				

【항목 2.5.】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5.1.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2.5.2.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소 계					2
합 계(항목 2.1.~2.5.)	12	5	-	-	2

* 외국인 근로자: 공사의 경우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현지 채용인을 포함함

이슈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3.1.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3.1.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3.1.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3.1.4. 공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정]✓				
소 계	2	2			

【항목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3.2.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지정]✓				
3.2.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3.2.3.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3.2.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3.2.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소 계	5				

【항목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3.3.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3.3.2. 공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3.3.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3.3.4. 공단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지정]✓				
3.3.5.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한다.	✓				
소 계	5				
합 계(항목 3.1.~3.3.)	12	2			

이슈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 4.1.】 강제노동 금지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4.1.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4.1.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4.1.3. 공단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4.1.4. 공단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4.1.5. 공단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4.1.6.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4.1.7.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				
소 계	7				

【항목 4.2.】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4.2.1. 협력업체 또는 용역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4.2.2.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소 계	2				
합 계(항목 4.1.~4.2.)	9				

이슈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5.1.】 연소자 고용 금지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5.1.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5.1.2. 공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5.1.3.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5.1.4. 공단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소 계	4				

【항목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5.2.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5.2.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5.2.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5.2.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5.2.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5.2.6.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 하였다.					✓
5.2.7.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5.2.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
소 계					8
합 계(항목 5.1.~5.2.)	4	-	-	-	8

이슈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6.1.】 사업장 안전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6.1.1.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6.1.2. 공단 사업장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지정]	✓			
6.1.3.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6.1.4.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6.1.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한다.	[지정]	✓			
소 계		5			

【항목 6.2.】 임신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6.2.1. 임신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 되고 있다.			✓		
6.2.2.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 시키지 않는다.					✓
6.2.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6.2.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정]	✓			
소 계		2	1		1

【항목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6.3.1. 공단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정]	✓			
6.3.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6.3.3. 사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				
6.3.4.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지정]	✓			
6.3.5.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소 계	2	2		1	

【항목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6.4.1.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지정]		✓		
6.4.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6.4.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소 계	1		1		1
합 계(항목 6.1.~6.4.)	3	9	2	1	2

이슈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7.1.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			
7.1.2. 공단은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지정]		✓		
7.1.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파트너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지정]	✓			
7.1.4. 공단은 협력업체와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소 계		2	2		

【항목 7.2.】 모니터링 실시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7.2.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파트너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7.2.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업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소 계			1	1	

【항목 7.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7.3.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7.3.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지정]			✓	
7.3.3. 회사가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7.3.4. 회사가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소 계				4	
합 계(항목 7.1.~7.3.)	-	2	3	5	

* 보안담당 직원: 공사 사업장의 경비 및 출입보안 요원으로서 직·간접 고용 형태 전부에 해당

이슈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8.1.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8.1.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8.1.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8.1.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8.1.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소 계	4	1			

【항목 8.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8.2.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8.2.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8.2.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소 계	3				
합 계(항목 8.1.~8.2.)	7	1			

이슈 9. 환경권 보장

【항목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9.1.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지정]✓				
9.1.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			
9.1.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9.1.4.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9.1.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소 계	4	2			

* 환경경영체제: ISO14001, ISO14031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임

【항목 9.2.】 환경정보의 공개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9.2.1.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지정]✓				
9.2.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9.2.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소 계	2		1		

【항목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9.3.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9.3.2.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9.3.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9.3.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	
소 계		1	2	1	

【항목 9.4.】 비상계획 수립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9.4.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지정]		✓		
9.4.2. 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정]		✓		
9.4.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9.4.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계 당국 등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9.4.5.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소 계		1	4		
합 계(항목 9.1.~9.4.)	6	4	7	1	

이슈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10.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0.1.1. 공단은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의 설계, 개발,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10.1.2. 공단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설계, 개발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지정]				✓
10.1.3.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이용방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10.1.4. 공단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고객을 속이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10.1.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서비스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10.1.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고객에 따라 다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소 계	4		1		1

* 사전 평가: 공인된 시험평가 기법을 적용한 각종 안전성·품질 평가를 포함

【항목 10.2.】 서비스 결함시 조치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0.2.1. 공단은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서비스를 조속히 중단, 철회한다.					✓
10.2.2.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서비스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고객에게 알린다.	✓				
10.2.3.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소 계	1				2

【항목 10.3.】 고객 개인정보 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0.3.1.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0.3.2.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지정]✓				
10.3.3.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10.3.4.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지정]✓				
10.3.5.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10.3.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소 계	6				
합 계(항목 10.1.~10.3.)	11		1		3

붙임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표

2.1. 체육서비스(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 - 실내체육팀

이슈 1. 고객 인권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1.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객에 대한 권리침해(차별, 권리제약 등)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				
1.2.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				
1.3.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고객 접점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포함)	✓				
1.4. 공단은 고객의 안전사고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매뉴얼, 주기적 점검 등)을 갖추고 있다.			✓		
1.5. 공단은 고객의 안전사고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설비 및 용품(난간, 펜스, 안전표지, 소독제 등)을 갖추고 있다.	✓				
1.6. 공단은 체육시설에 안전요원과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된 응급후송 체계를 갖추고 있다.			✓		
1.7. 공단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 계	5		2		

이슈 2.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1. 공단의 체육시설은 고령자 및 장애인 이동보조기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사로, 리프트, 점자블럭 등)		✓			
2.2. 공단의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국어 및 점자로 병기된 안내표지를 갖추고 있다.			✓		
2.3. 공단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			
소 계		2	1		

이슈 3. 근로자 인권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3.1. 체육시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보호장구류, 위생용품 등을 공단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		
3.2. 공단의 체육시설은 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				
3.3.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객에 의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			
3.4. 공단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을 전담하는 업무 담당자 또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3.5.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프로그램(EAP)을 제공한다.			✓		
소 계	1	1	3		

2.2. 주차장서비스(공영주차장 운영) - 주차사업팀

이슈 1. 고객 인권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1. 공단은 주차시설 이용객에 대한 권리침해(차별, 권리제약 등)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				
1.2. 공단의 주차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				
1.3. 공단은 주차시설 이용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				
1.4. 공단은 주차시설에서의 화재, 사고, 도난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1.5. 공단은 이용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				
1.6. 공단은 주차시설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 계	6				

이슈 2. 사회적 약자 접근성 보장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2.1. 공단의 주차시설은 장애인 및 외국인의 이용과 주차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주차면수, 이동공간, 다국어 표지판 등)		✓			
2.2. 공단은 장애인 주차면에 대한 일반이용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2.3. 공단의 주차시설은 외국인 및 장애인 이용편의(팜플렛, 점자, 휠체어리프트 등)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소 계	1	2			

이슈 3. 근로자 인권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3.1. 주차시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계절별 피복, 보호장구류, 위생용품 등을 공단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				
3.2. 공단의 주차시설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설비를 포함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				
3.3. 공단은 주차시설 이용객에 의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				
3.4. 공단의 주차시설은 근로자를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격벽, 경찰 및 소방관서 연계 신고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				
3.5. 공단은 주차시설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프로그램(EAP)를 제공한다.		✓			
3.6. 공단은 주차시설 근로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		
소 계	4	1	1		

이슈 4. 지역 환경보호

지 표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4.1. 공단은 저공해 및 경형 차량에 대한 주차료 할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4.2. 공단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및 공회전 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			
소 계	1	1			